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방지 규칙

제정 2021. 8. 9. 개정 2024. 2. 14.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「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여성폭력방지 기본법」제18조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의 성희롱·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칙은 진흥원 임직원에게 적용되며, 진흥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'성희롱'이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.
 - 가.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 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 - 나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
- 2. '성폭력'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3. '2차 피해'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- 4. "주관부서"라 함은 성희롱 관련 업무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부서를 말한다.
- 5. "주관부서장"이라 함은 경영기획본부장을 말한다.
- 제4조(원장의 책무) ①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

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1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<개정 2024. 2. 14.>
- 2.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(2차 피해포함) <개정 2024. 2. 14.>
- 3.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(2차 피해포함) <개정 2024. 2. 14.>
- 4. 성희롱 ·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
- 5.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
- 6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
- 7.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
- 8.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 홍보 <신설 2024. 2. 14.>
- 9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 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<신설 2024. 2. 14.>
- 10.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<신설 2024. 2. 14.>
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조 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- ③ 원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14.>
- 제4조의2(상급기관의 관리·감독 강화) ①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(이하 "2차 행위자"라 한다)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·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,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·감독을 받도록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진홍 원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4. 2. 14.]

- 제4조의3(상급자의 책무)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(이하 "상급자"라 한다)는 성희롱·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.
 -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.
 - 1.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
 - 2.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

- 3.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
-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4. 2. 14.]

- 제4조의4(임직원의 책무) 진흥원의 임직원(행위자 포함)은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 - 1.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
 - 2.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
 - 3.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)
 - 4.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
 - 5.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
 - 6.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
 - 7.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
 - 8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

[본조 신설 2024. 2. 14.]

- 제5조(고충상담창구) ①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상담,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 성희롱·성폭력 고충 상담창구(이하 "고충상담창구"라 한다)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②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원(이하"고 충상담원"이라 한다)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, 남성 및 여성이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.
 -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(2차 피해 포함)에 대한 상담
 - 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(2차 피해 포함)에 대한 고충의 접수·조사 및 처리 <개정 2024. 2. 14.>
 - 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성희롱·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 - 5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<개 정 2024. 2. 14.>

- 6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업무 <개정 2024. 2. 14.>
-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[별지 제1호]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이버신고센터) ① 주관부서는 성희롱·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 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임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.
- 제7조(고충처리 업무의 지원)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②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.
 - ③ 주관부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④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 - ⑤ 주관부서장은 성희롱·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예방교육) ① 주관부서장은 매년 4월까지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②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1. 성희롱 · 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
 - 2.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 - 3.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,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
 - 4.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- 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· 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
 - 6.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
- ③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④ 주관부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매년 1회 직위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주관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, 교육사진,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.
- ⑥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게시판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임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. <신설 2024, 2, 14.>
- 제9조(고충상담) ①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자는 서면, 전화,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 여야한다. <신설 2024, 2, 14.>
- 제9조의2(통보 및 신고의무) ① 원장은 성희롱,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.
 - ② 원장 또는 고충상담원은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4. 2. 14.]

- 제10조(조사) ①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(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)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[별지 제2호] 서식의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고충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③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24. 2. 14.>
- 1.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

- 2.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
- 3.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
- 4.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
- 5.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
- 6.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
- 7.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
- 8.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
- 9. 정당한 이유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
- 10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
-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. 특히 제12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내 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-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.
-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,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⑦ 성희롱·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, 온라인,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.
- ⑧ 원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·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14.>
- ⑨ 원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·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24. 2. 14.>
- 제11조(조사결과의 보고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-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14.>
- 제12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주관부서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(피신청인)와의 업무·공간 분리,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주관부서장은 피해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, 조사신청,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징계,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
- 2. 전보, 직무 배제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- 3. 근무성적평정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급여의 차별 지급
- 4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
- 5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- 6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7.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<신설 2024. 2. 14.>
- 8.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<신설 2024. 2. 14.>
- 9. 그 밖에 피해자, 신고자, 조력자,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<개정 2024. 2. 14.>
- ③ 원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전보,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원장,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건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3조(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·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.
 -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(이하 "외부위원"이라 한다)로 위촉한다.
 -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.
 - ⑥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은 위원회가 반드시 심의하도록 한다.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⑦ 제12조제2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. <신설 2024. 2. 14.>
- **제14조(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
-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·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, 위원 본인도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.
- 1. 성희롱・성폭력의 판단(2차 피해 포함)
- 2.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
- 3.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
- 4.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
-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조사 등 결과 통지) 주관부서장은 당사자에게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장계) ①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.
 - ③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 - ④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·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「인사규정」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7조(재발방지조치 등) ①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(2차 피해 방지 포함)을 수립·시행한다.
 - ②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·성 폭력 예방교육, 성희롱·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원장은 성희롱·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 조치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2. 14.>
 - ④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, 성희롱·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,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

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 <신설 2024. 2. 14.>

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4. 2. 14.>

부 칙

제1조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이 규칙 제정에 따라 「성희롱예방지침」은 폐지한다.

부 칙 <2024. 2. 14.>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고충접수 및 처리대장

접수	접수	신	l청인	フォルの	처리결과	회신 확 인			
번호	일자	성 명	소속부서	고충내용		일자	팀 장	단장	본부장

[별지 제2호]

성희롱·성폭력 고충신고서									
	시하이	성 명		소 속					
	신청인	직 급		성 별					
당사자	대리인 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성 명		소 속					
3/1/1		직 급		성 별					
	행위자	성 명		소 속					
		직 급		성 별					
	대면 상담신청 🗆 예				□ 아니오				
상 담 (신 청) 내 용	※ 6하 원칙에 의하	ㅐ 문제가 도	는 행위, 지속성의 여	부, 목격자	혹은 증인의 유무 등				
요구사항	을 기록합니다.								
※ 조사를 원하는 경 우	1. 성희롱·성폭력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기타()								
처리결과 (담당자 기재란)									
※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 gochung@kisa.or.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